

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—

## 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제안 이유

○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,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○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발행근거규정이 신설되어 관련규정 정비(안 제7조)

○ 공채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되어 관련규정 정비(안 제5조)

○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, 매입대상별금액, 채권등록방법, 이율 및 상환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동조례로 정함(안 제6조~제12조)

○ 기금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자대상범위 확대(안 제15조)

-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(상·하수도, 도로·공영개발사업등), IT, BT,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

→ 체육시설업, 관광사업, 기타 경영수익사업 추가

○ 일부 매출기준의 미비점 보완(안 제7조 별표1)

- 자동차배기량 적용기준을 1,500cc → 1,600cc로 변경
- 승합자동차 매출대상을 11인승이상 → 1,000cc이상으로 변경
- 화물·특수자동차 매출대상을 1톤이상 → 1,000cc이상으로 변경
-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~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점진적 인상하는 특례규정 마련
-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매입규정 삭제
- 각종 계약관련 매출시 매입기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및 계약금액 하한선을 100만원 → 200만원으로 상향조정
- 공채매입산출금액 절사액을 5천원 → 1만원으로 상향조정

○ 기타, 조문등을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

□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규정인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, 보완하고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안 제5조 공채발행승인은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의회로 변경하고 있으며,
- 안 제6조~제12조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, 매입대상별금액, 채권등록방법, 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

데, 이는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.

※ 지방공기업법

제19조(지방채)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, 매입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방법,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아울러 안 제15조에서는 기금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자대상범위 확대하고 있으며, 특히 체육시설업, 관광사업,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용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 - 그 밖에 안 제7조 별표1 공채 매출기준 변경내역으로서, ▽자동차배기량 적용기준은 1,500cc에서 1,600cc로, ▽승합자동차 매출대상은 11인승이상에서 1,000cc이상으로, ▽화물·특수자동차 매출대상은 1톤이상에서 1,000cc이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,
  - ▽각종 계약관련 매출시 매입기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및 계약금액 하한선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, ▽공채매입산출금액 절사액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.
- 검토결과, 관련규정의 제.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례시행의 현실성을 높이며, 특히 그 동안 지역개발기금 용자대상사업이 제한적이어서 기금이 거의 사장되다시피한 현실에서 용자대상사업의 확대는 앞으로 자금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.
- 다만, 안 제7조의 공채 매출기준 조정에 따라 연간 기금재원수입에도 변동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략적인 변동규모내지 폭은 어느정도 예측하는지, 그리고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규모와 용자조건 및 이율, 용자실적 등에 관해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